

1. 사업명 :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 **good** + **monitor** and **action**)은 아동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실생활에서 아동권리 침해 상황을 살펴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아동참여조직입니다.

2. 사업목적

아동권리 주체인 아동·청소년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와 그 중요성을 알고 이를 기반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켜 자신이 속한 공동체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	
생존의 권리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권리입니다. 질병과 상처 등을 치료 받을 수 있으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로 안전한 집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며,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에 관해서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권리입니다.
발달의 권리	아동들의 성장에 가장 필요한 권리입니다.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놀이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로 학교생활, 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생각, 종교의 자유를 보장 받으며, 아동이 가장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기도 합니다.
보호의 권리	아동에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보호 받을 권리입니다. 모든 형태의 학대, 차별, 착취로부터 보호하며, 약물, 성매매·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참여의 권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입니다. 자신이 속한 학교, 지역, 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참가하며,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자유롭게 발언, 필요한 단체에 가입,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사업개요

가. 기 간 : 2026년 5월 ~ 2026년 9월 (약 5개월)

나. 대 상 : 창원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내 초등학생

다. 활동내용

- 아이들의 아동 권리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진행
- 아동권리 인식조사를 통해 문제 상황을 도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제안

Ⅱ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내용

1. 주제관련 기본교육 및 토론헌동 진행

- 활동주제 : 디지털 속 아동권리
- 활동목적 : 주제에 대한 아동들의 의견을 나누고 함께 토론하면서 문제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디지털 속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활동지 작성
- 활동개요

구분	내용
대상	창원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인원	21명
방법	주제 관련 토론 및 활동지 작성
기간	2026년 5월 29일(금) / 2026년 7월 15일(수)

○ 활동사진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기본 교육 진행



주제 관련 토론



활동주제 관련 조별 활동지 작성

2. 디지털 속 아동권리 인식 조사 캠페인 활동 진행

- 활동주제 : 디지털 속 아동권리
- 활동목적 : 캠페인활동을 통해 디지털 속 아동권리 관련 인식 조사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
- 활동개요

구분	내용
대상	창원유목초등학교 초등학생 및 센터 내 초등학생
인원	총 60명
방법	캠페인 활동
기간	2026년 6월 11일(목)

○ 활동사진



유목초등학교 및 센터 내 캠페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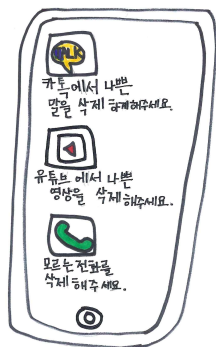
캠페인 결과

3. 디지털 속 아동권리 개선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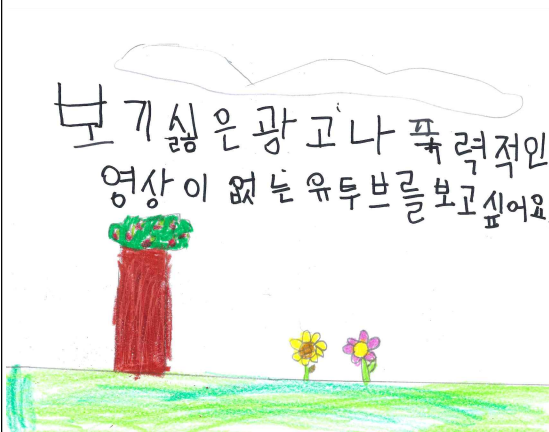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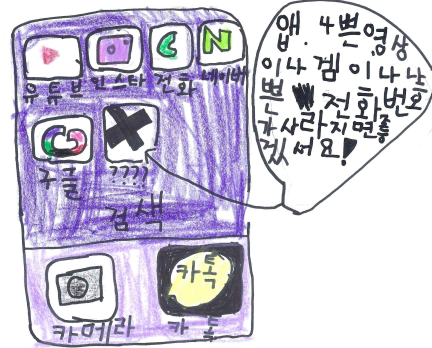
- 활동주제 : 디지털 속 아동권리 정책 제언
- 활동목적 : 캠페인 활동 결과 공유 및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정책제언
- 활동개요

구분	내용
대상	창원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인원	20명
방법	의견 공유 및 정책제언 관련 활동지 작성
기간	2026년 9월 2일(수)

○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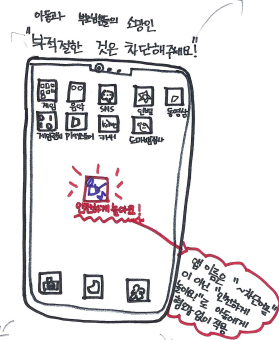


나쁜 말 나쁜 영상 모르는
전화 등을 없애
주세요!



앱의 기능? 1
14+ 앱이 이용이 금지되며 앱을
실용할 경우, 금지되어있다"가 되어
있는 거 아닌 아동에게 이용만
금지되며, 실용한거 30% 지나면
앱이 뒤기며 개발할 기술이 작을 것이다.

앱의 기능? 2
이것이 아닌 전화번호나 다른
자율자단 기능이 바뀌며, 신고가
자율로 됩니다. 단, 바 신고는
경찰 SI에기 하며, 12점하드
한드SI로 2와 신고가 경찰로
가져 됩니다.



실버반
보장이 약해 "공정"하는 것이
아닌, 아동이 자율로 이용하는
행위로, 삭제는 가능하게 합니다.

*정확한 시점 기능
영역에 앱/앱은 2와 1로
자율로 2와 가능하며, 앱의 기능 2
외 기능은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

"디지털 속 안전한 아동권리" 정책제언 활동지 작성

Ⅲ 제안내용 및 기대효과

1. 제안목적

- 디지털 속 아동권리는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SNS 등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동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의미함.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폭력, 차별, 개인정보 오용, 상업적 착취 등 아동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 아동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는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적응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량임. 이처럼 디지털 환경과 디지털 활용은 아동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사이버 괴롭힘, 개인정보 유출, 유해 콘텐츠 노출, 초상권 침해 등 디지털 속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아동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함.

-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 및 캠페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아동의 디지털 속 안전한 환경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길 제안함.

2.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내용

「아동의 디지털 속 안전한 환경 마련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이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SNS 등 디지털 환경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 및 보호체계를 마련한다.

① 아동 유해 콘텐츠 차단 및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아동의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유해 콘텐츠 및 유해 앱을 차단할 수 있는 아동 보호 앱 또는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의 개발·보급을 지원한다.

아동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에서 유해 콘텐츠, 불법·폭력성 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지원하며 단순한 사용 제한이 아니라 아동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② 보이스피싱·스팸 등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기능 지원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스팸문자, 온라인 사기 및 개인정보 탈취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아동보호 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한다.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나 문자, 인터넷 링크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안전기능을

제공하여 아동이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한다.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디지털 위험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상담 기능을 연계한다.

③ 아동 대상 디지털 권리 및 안전교육 실시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디지털 속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 참여형 교육과 체험활동을 확대한다.

④ 디지털 권리 침해 피해 아동 지원체계 마련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아동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신고·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기관, 경찰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및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아동이 추가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⑤ 아동이 참여하는 디지털 권리 정책 마련

디지털 환경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 대상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등 아동 참여기구를 활용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디지털 아동권리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3. 기대효과

-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이버 괴롭힘, 개인정보 침해, 유해 콘텐츠 노출, 온라인 사기 등 디지털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 아동의 디지털 리터러시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 디지털 권리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아동 참여와 권리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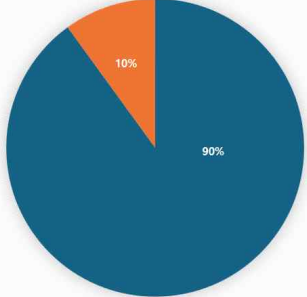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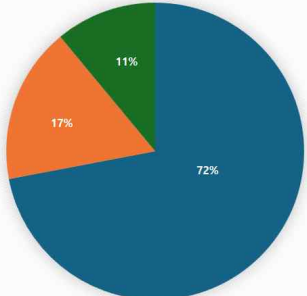
IV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구 분	내 용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1.06] (제정) 2025.11.06 조례 제25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흥시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디지털 시민성”이란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존중하며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생성·소통·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말하며, 디지털 도박, 사이버폭력, 혐오표현, 성범죄 등 온라인 유해요소를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한다. 3.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란 청소년이 온라인 공간에서 신체적·정서적 위협 없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모든 청소년은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존엄과 권리를 보호받으며 디지털 시민으로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 제4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과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성과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에 함께해야 한다. ③ 지역사회, 학교, 미디어, 민간기업 등 사회 구성원은 청소년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온라인 환경 및 기반 조성에 협력할 책임이 있다. ④ 청소년은 디지털 환경에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안전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연계·협력 방안 4.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피해 회복 지원 연계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계획을 「시흥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 교육 및 인식 증진 사업 2. 온라인 범죄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홍보·캠페인 사업 3. 피해 예방 및 지원 매뉴얼,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안내 4. 피해자 상담·연계 체계 운영 5.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 교육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 6.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보호·복지 역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정보 제공 및 홍보) ① 시장은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온라인 안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보호자, 교육자, 지역사회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책임 있는 행동 및 정보 이용에 관한 디지털 시민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홍보 및 각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단체 및 학생회,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5. 11. 6. 조례 제2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V 캠페인 활동 설문조사 결과

- 디지털 속 아동권리 캠페인 활동 결과 (총 60명 참여)

디지털 속 아동권리 침해를 받은적이 있나요?  ■ 받은적이 있다. ■ 받은적이 없다.	디지털 속 아동권리 침해를 받은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90%이상(54명)이 받은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음.
어떤 상황에서 아동권리 침해를 받았나요?  ■ 개인정보 유출 ■ 유해 콘텐츠 노출 ■ 사이버 괴롭힘	어떤 상황에서 아동권리 침해를 받았나요? 라는 질문에 개인정보 유출(나의 개인정보가 모르는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스팸 문자나 전화가 와요.)72%, 유해 콘텐츠 노출(동영상을 볼 때 폭력적인 영상, 게임, 광고가 나와요.)17%, 사이버 괴롭힘(특이나 메신저에서 욕을 하거나 놀림을 당해요)11% 라고 응답하였음.
3. 디지털 권리 침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제안해주세요.	
- 사이버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요. - 스팸전화나 문자가 안올 수 있게 차단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어 주세요. - 학교에서 아동의 디지털 권리에 대한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 아동들이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동영상이나 게임 사이트를 만들어 주세요.	